

1. 개정이유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류를 합리화하여 수출자 편의를 증대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 목록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수출자 서약서’를 수출허가 신청서류에서 제외·폐지하고 수출자의무사항을 이관(안 제18조의3, 제20조, 제42조, 제51조, 별지 3)

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이중용도·군용물자목록을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다. 별표·서식의 오류 수정, 의미 명확화 및 작성방법 안내(안 별표 22, 별지 2, 별지 2-2, 별지 2-3, 별지 4, 별지 6, 별지 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수출자의 의무) ① 수출자는 전략물자등을 수출함에 있어 거래 관련자(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이하 “거래관련자”)의 신원 등에 대하여 수출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관련자의 신원 및 수출 물품등의 사용용도에 의문이 생길 경우 허가받은 후라도 수출을 즉시 중단한 후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 또한, 수출 후에도 거래관련자의 신원 및 수출 물품등의 사용용도에 의문이 생길 경우와 거래관련자로부터 재판매나 재수출 또는 국외로의 재제공을 위해 사전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9조의3 또는 제19조의4”를 “제19조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 제5

호”를 “제2호”로 한다.

제4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5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 중 “1항부터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첨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첨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첨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첨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 중 “목적지국가”를 “최종목적지국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목적지국가”를 “최종목적지국가”로 한다.

별표 2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범위반전력	0.1	-수출제한 1회 이상 -교육명령 또는 경고 누적횟수 2회 이상	-경고 1회	-교육명령 1회
-------	-----	---------------------------------------	--------	----------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제1호 중 “biological &”를 “biological,”로, “or missiles”를 “and missiles as delivery systems for such weapons”로 하고, 같은 서식 기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제1호 중 “biological &”를 “biological,”로, “and missiles or”를 “and missiles as delivery systems for such weapons, or for

the development or manufacturing of”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기호(*) 중 “⑤항 및”을 “⑤,”로, 같은 기호(*) 중 “경우 ⑧ - ⑬항”을 “경우 ⑧ - ⑨, ⑫ - ⑬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기호(*) 중 “skip ⑧ - ⑬”를 “skip ⑧ - ⑨ and ⑫ - ⑬”로 하고, 같은 서식 기호(*) 중 “품목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로 하며, 같은 서식 기호(*) 중 “In case of item-comprehensive export license, please fill”를 “* Fill”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STATEMENT BY ULTIMATE CONSIGNEE AND PURCHASER

① Ultimate Consignee		② Exporter	
Name		Name	
Address		Address	
City	Country	City	Country
③ Commodities			
We have placed orders with the person or firm named in ② for commodities indicated below.			
ITEM (Model No. and Type)		QUANTITY	
④ Disposition or use of items by Ultimate consignee named in ① (check and complete appropriate box(es))			
We certify that the item(s) listed in ③ :			
a. ☐ Will be used by us (as capital equipment) in the form in which received in a manufacturing process in the country named in ① and will not be reexported or incorporated into an end product.			
b. ☐ Will be processed or incorporated by us into the following product(s) _____ (Specify) to be manufactured in the country named in ① for distribution in _____. (Name of country or countries)			
c. ☐ Will be used to service the following commodities _____ (Specify computers, aircraft, etc.) in the following destinations _____.			
d. ☐ Will be resold by us in the form in which received in the country named in ① for use or consumption therein. The specific end-use by my customer will be _____ (Specify, if known)			
e. ☐ Will be reexported by us in the form in which received to _____. (Name of country or countries)			
f. ☐ Other (Describe fully)			
⑤ NATURE OF BUSINESS OF ULTIMATE CONSIGNEE			
A. The nature of our business is(e.g. distributor, manufacturer, wholesaler, value added original equipment retailer, etc)			
B. Our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exporter is(eg contractual, franchise, distributor, wholesaler, regular customer, etc) and we have had this business relationship for _____ years			
⑥ STATEMENT OF ULTIMATE CONSIGNEE AND PURCHASER			
We certify that all the facts contained in this statement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and belief and we do not know of any additional fact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above statement. We shall promptly send a supplemental statement to the person named in ②, disclosing any change of facts or intentions set forth in this statement which occurs after the statement has been prepared and forwarded. Except as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Foreign Trade Act」, we will not reexport, resell, or otherwise dispose of any commodities listed in ③ above : (1) to any country not approved for export as brought to our attention by means of a bill of lading, commercial invoice, or any other means ; or (2) to any person if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it will result directly or indirectly, in disposition of the commodities contrary to the representations made in this statement or contrary to the 「Foreign Trade Act」.			
⑦ SIGNATURE OF ULTIMATE CONSIGNEE (OR COMPANY SEAL)		⑧ SIGNATURE OF PURCHASER (OR COMPANY SEAL)	
NAME OF OFFICIAL		NAME OF OFFICIAL	
TITLE OF OFFICIAL		TITLE OF OFFICIAL	
DATE(mm dd, yyyy)		DATE(mm dd, yyyy)	
Additional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⑦, ⑧ are to be signed by the ultimate consignee shown in ① and by the Purchaser where the latter is not the same as the ultimate consignee. Where the ultimate consignee is unknown, ⑧ should be signed by the purchaser.			
⑨ CERTIFICATION FOR USE OF REPUBLIC OF KOREA EXPORTER			
We certify that no corrections, additions, or deletions were made on this form by us after this form was signed by the ultimate consignee and purchaser.			
SIGNATURE OF PERSON AUTHORIZED TO CERTIFY FOR EXPORTER (OR OFFICIAL SEAL)			
NAME OF PERSON SIGNING THIS DOCUMENT	TITLE OF PERSON SIGNING THIS DOCUMENT	DATE(mm dd, yyyy)	

전문판정(신청)서 Classification (Application) Form

			처리기간 : 15일 Handling Time : 15 days	
① 신청인 Applicant	상 호 Name of Company		신청인 Applicant	
	주 소 Address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 화 Telephone		무역업고유번호 (Trade Business Code)	
② HS번호 HS Code		④ 형식 및 규격 Type and Specifications		
		모델번호 및 모델명(동 기술에 의한 생산제품) Model Number & Name (Items developed or produced from the technology)		규격/용도 Specifications/Usage
③ 물품명(기술명 및 기술내용) Item				
⑤ 판정 결과 Classification results		전략물자등 해당여부 (해당시 통제번호 기재) Controlled(Control Classification No.) / Uncontrolled		
		• 이중용도품목 (Dual-Use Item(s))		해당(Yes) ☐ 비해당(No) ☐ 예외적 비해당 ☐
		• 원자력전용품목 (Trigger Item(s))		해당(Yes) ☐ 비해당(No) ☐ 예외적 비해당 ☐
		• 군용물자품목 (Munition(s))		해당(Yes) ☐ 비해당(No) ☐ 예외적 비해당 ☐
		• 상황허가대상품목 (designated Catch-all Item(s))		해당(Yes) ☐ 비해당(No) ☐ 이란 ☐ 시리아 ☐ 파키스탄 ☐ 러시아 ☐ 벨라루스 ☐
		• 통제번호 Classification No :		
		• 통제체제 (해당체제 모두 표기) : [WA] 민감 ☐ [WA] 초민감 ☐ [NSG] Part1 민감 ☐ [MTCR] Cat1 ☐		
⑥ 판정 상세근거 Classification comments				
⑦ 유효기간 Validity of Classification		⑧ 발급번호 Issue No.		
⑨ 결과 공개 동의 여부 Consent to share classification results		☐ 공개 (With all) ☐ 일부공개 (With Specified Person) ☐ 비공개 (With None)		
「대외무역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등 해당여부의 판정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for classification of the items as stated above as stipulated in Article 20 of the 「Foreign Trade Act」 and Article 36(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20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Name of Applicant Signature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⑤항과 같이 전략물자등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I hereby confirm the ruling of classification as stated in ⑤ above as stipulated in Article 3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20 기관장 (인) Sealed by Head of Classification Agency				

* 주의사항 :

- ⑤ 판정결과가 "해당"인 물품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수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잘못된 정보 등에 따른 판정오류 및 그로 인한 무허가 수출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Annexed paper No. 7

Ministry of () Republic of Korea

① 수입자 Importer (Name and Address)		② 수출자 Exporter (Name and Address)	
③ 업무담당자 Contact Person (Name, Phone, Email)		④ 최종사용자 End User (Name and Address)	
⑤ 물품명세 Description of Items			
HS 번호 HS Code	품목 및 규격 Items and Specifications	수 량 Quantity	가 액 Value (FOB, CIF etc.)
통제번호			
⑥ End use of the Items listed in ⑤ :			
1) Items delivered by Exporter will not be used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r their means of delivery. 2) Items delivered by Exporter will not be modified or reexported for the purpo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r their means of delivery. 3) Items delivered by Exporter will be used for only the purposes specified in the Contract No.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undersigned importer has undertaken to import into the Republic of Korea the described above or, if the items are not imported in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undersigned importer will not divert, transship or reexport them to another destination except for the explicit approval of the Minister of (), that the undersigned importer also undertakes to notify the appropriate Ministry immediately of any changes of fact or intention set forth herein. and that the undersigned importer will contribute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and stability on the basis of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20 Applicant(Importer)		Signature	
Minister of () (Official Stamp)			
이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출국 담당기관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 This document ceases to be valid unless presented to the competent foreign authorities within twelve months from the date of issu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8조의3(수출자의 의무) ① 수</u> <u>출자는 전략물자등을 수출함에</u> <u>있어 거래 관련자(구매자, 최종</u> <u>수하인, 최종사용자)(이하 “거</u> <u>래관련자”)의 신원 등에 대하여</u> <u>수출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확</u> <u>인하여야 하며, 거래관련자의</u> <u>신원 및 수출 물품등의 사용용</u> <u>도에 의문이 생길 경우 허가받</u> <u>은 후라도 수출을 즉시 중단한</u> <u>후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반드시</u> <u>협의하여야 한다.</u> <u>② 또한, 수출 후에도 거래관련</u> <u>자의 신원 및 수출 물품등의 사</u> <u>용용도에 의문이 생길 경우와</u> <u>거래관련자로부터 재판매나 재</u> <u>수출 또는 국외로의 재제공을</u> <u>위해 사전동의를 요구받은 경우</u> <u>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반드시</u> <u>협의하여야 한다.</u>
제20조(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 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	제20조(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① ----- ----- -----

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 2. (생략)

4. (생략)

5.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6. ~ 8. (생략)

②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계약 체결 없이 기술을 수출할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4. ~ 6.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3 또는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

-----.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 제4호와 같음)

<삭제>

4. ~ 6.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

-----.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3. ~ 5.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③ -----
제19조의3-----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목적지국가가 별표 6 제1호 나 의2 지역에 해당하거나, 나의2 지역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환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2. ~ 4. (생략)

④ (생략)

제42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신청서류) 제41조에 따른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4. ~ 7. (생략)

제51조(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신청서류) 제50조에 따른 군함설

-----.

-----.

1. ----- 제2호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신청서류)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 6.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51조(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신청서류) -----

계기술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수출허 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수출자 서약서 1부 3. ~ 8. (생 략) 제54조의2(상황허가의 면제) ① (생 략) ② 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제94조에 따 른 위반행위자이거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제54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록된 자인 경우 상황허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호 전 락물자수출입고시 부칙 <신 설>	-----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 7. (현행 제3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 제54조의2(상황허가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 ----- ----- ----- -----.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호 전 락물자수출입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